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배진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16

발의연월일: 2020. 11. 3.

발 의 자:배진교·장혜영·강은미

이은주・류호정・최강욱

허종식 · 강민정 · 심상정

김진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IMF 경제위기를 겪으며 재벌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의 위험성을 목도하고,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 아짐에 따라 이에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고 행위제한을 조건 부로 한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됨.

그러나 지주회사 전환 이후 재벌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더 늘었으며,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적합업종까지 진출하여 이들의 생존을 위협함은 물론 일감몰아주기와 결합하여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조장하고 있음.

이에, 신규계열회사의 손자회사 원칙적 금지, 자회사 주식보유율 상향 및 부채비율 조정, 공익법인을 포함한 금융회사·보험회사의 의결 권 예외규정 삭제,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,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전 면 폐지 등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 고,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,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및 창의적 기업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지주회사의 부채액 규모를 현행 자본총액의 2배에서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으로 강화하고,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상장 20% 및 비상장 40% 이상에서 상장 30% 및 비상장 50% 이상으로 상향하며, 기존 지주회사 행위규제 정비를 위한 10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함(안 제8조의2제2항 및 부칙 제2조).
- 나.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모든 순환출자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되, 이 법 시행 이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통지받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하고, 해소하지 못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함(안 제9조의3 및 부칙 제3조).
- 다.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당해 국내 계열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, 정관 변경 등을 결의하는 경우 그 계열회사 주식발행총수의 15%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결권을 폐지함(안 제11조제1항제3호 삭제).
- 라.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공익법인이 취득

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(안 제11조제2항 신설).

마.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기준을 특수관계인 합산 20%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으로 일원화하고, 자회사가 소유한 지분이 50% 이상일 경우와 그 자회사가 상장회사일 경우 30%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하며, 특수관계인에 대한 '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'를 '정당한 이유 없이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'로 수정하고, 긴급성·효율성·보안성 등 예외사유를 삭제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함(안 제23조의2).

바.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함(안 제71조제1항 삭제).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의2제2항제1호 본문 중 "자본총액(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2배를"을 "자본총액(대차대 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"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"자본총액의 2배를"을 각각 "자본총액을"로 하 며,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"100분의 40"을 "100분의 50"으로, "경우,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"를 "경우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. 벤처지주회사의"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;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손자회사는"을 "자회사는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3 호 중 "손자회사"를 각각 "자회사"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"손자회 사가"를 "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관성이 있는"으로 하 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손자회사"를 "자회사"로, "증손회사"를 "손자회사"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증손회사"를 각각 "손자회사"로 하고. 같은 조 제7항 중 "持株會社는 大統領令"을 "지주 회사는 대통령령"으로. "지주회사·자회사·손자회사 및 증손회사"를 "지주회사・자회사 및 손자회사"로, "株式所有現況・財務狀況 등"을

"주식소유현황·재무상황·내부거래에 따른 수익현황 등"으로, "公正 去來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"를 "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9조의3(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)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로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단 내의 계열출자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 - ②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국내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기존에 형 성된 순환출자를 해소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제11조의 제목 중 "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"을 "금융회사· 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3호를 삭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6조에 따른 공익법 인등(이하 "공익법인등"이라 한다)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 사할 수 없다. 다만, 공익법인등이 해당 국내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

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제9조의2"를 "제9조의2, 제9조의3"으로 한다.

제17조제4항제1호 중 "자본총액의 2배를"을 "자본총액을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"경우 및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"을 "경우에는 100분의 30"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라목(종전의 다목) 중 "100분의 40"을 "100분의 50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.

다.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

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회사는 특수관계인(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"를 "국내회사는 특수관계인(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주식발행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계열회사(국내계열회사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)"로, "부당한"을 "정당한 이유 없이"로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유형 또는 기준"을 "유형 및

기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66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제9조의3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제71조제1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지주회사(이하 "종전지주회사"라 한다)가 자본총액을 초 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② 종전지주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지배하던 자회사(이하 "종전자회사"라 한다)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③ 종전자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지배하던 손자회사(이하 "종전손자회사"라 한다)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

부터 10년 이내에 제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.

- ④ 종전손자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지배하던 증손회사(이하 "종전 증손회사"라 한다)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제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⑤ 종전자회사, 종전손자회사 또는 종전증손회사가 이 법 시행 이후 상호 간에 합병(분할합병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하여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종전지주회사의 자 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제8조의2제2 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⑥ 종전자회사가 이 법 시행 이후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종전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제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3조(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로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의 경우에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순환출자를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존 순환출자를 3년 이내에 해소하지 못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한다.

- 제4조(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)
 - ①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관하여는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 - ②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행위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8條의2(지주회사 등의 행위제	第8條의2(지주회사 등의 행위제
한 등) ① (생 략)	한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持株會社는 다음 각 호의	2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	
하여서는 아니된다.	
1. 자본총액(대차대조표상의 자	1. <u>자본총액(대차대조표상의 자</u>
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	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
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2배	<u>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</u>
를 초과하는 負債額을 보유하	
는 행위. 다만, 지주회사로 전	
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<u>자본</u>	자본총액
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	<u> </u>
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	
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	
된 날부터 2년간은 <u>자본총액</u>	<u></u> 자본총액을
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	
보유할 수 있다.	
2.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	2
발행주식총수의 <u>100분의 40</u>	<u>100분의 50</u>
[자회사가 「자본시장과 금융	
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	
주권상장법인(이하 "상장법	
인"이라 한다)인 경우, 주식	

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 이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 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 래소에 상장된 법인(이하 "국 외상장법인"이라 한다)인 경 우,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 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 다. 이하 이 조에서 "자회사 주식보유기준"이라 한다] 미 만으로 소유하는 행위. 다만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가. ~ 사. (생 략) 3. (생 략) 가. ~ 라. (생 략) 4. · 5. (생 략)

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
<u>경</u>
우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
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, 벤
처지주회사의
<u>.</u>

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
3. (현행과 같음)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4. · 5. (현행과 같음)
<<u>삭 제></u>

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1.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(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"이라 한다)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. 다만,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인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가.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 회사의 주식을 손자회사주 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 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 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
 - 나.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 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 이었던 손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

<u>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</u>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 부터 1년 이내인 경우

다. 손자회사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면서 「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 하거나 당해 손자회사가 「상법」 제513조(전환사 채의 발행) 또는 제516조 의2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의 규정에 따라 발행 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 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 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 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 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 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

라. 손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 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

마.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손자회사주식보 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(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)

- 바.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와
 합병하여 손자회사주식보
 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
 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
 부터 1년 이내인 경우
- 2.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.
 - 가.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

년 이내인 경우

- 나.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(같은 기간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)
- 다.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 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손자 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 정에서 당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 터 1년 이내인 경우(같은 기간내에 손자회사에 해당 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)
- 라.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손자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 인 경우(같은 기간내에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)

마. 손자회사가 다른 자회사

와 합병하여 그 다른 자회
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
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
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
바.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
는 자회사가 회사분할로
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
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
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
부터 1년 이내인 경우

- 3.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. 다만,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.
- ④ 일반지주회사의 <u>손자회사는</u>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 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<u>손자회사</u>가 될 당시에 주식 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

④ <u>자회사는</u>
1. <u>자회사</u>

사의	경	우	로서	<u>손</u>	자회/	<u>나</u> 에	해
당하기	4	된	날부	-터	2년	이내	인
경우							

- 2. (생략)
- 3.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<u>손자회사</u>가 회사분할로 인하 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 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 인 경우
- 4. <u>손자회사가</u> 국내계열회사(금 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) 발행주식총 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
- ⑤ 제4항제4호에 따라 <u>손자회</u> 산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 사(이하 "<u>증손회사</u>"라 한다)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 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

2. (현행과 같음)
3
<u> 자회사</u>
4. <u>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</u>
는 사업연관성이 있는
⑤차회사
<u>손자회사</u>
1. <u>손자회사</u>
손자회사

-----자회사-----

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

- 2. (생략)
- ⑥ (생략)
- 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주회 사・자회사・손자회사 및 증손 회사(이하 "지주회사등"이라 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公正去來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- 2. (현행과 같음)
- ⑥ (현행과 같음)
- ⑦ 持株會社는 大統領令이 정 | ⑦ 지주회사는 대통령령------사·자회사 및 손자회사-----다)의 株式所有現況・財務狀況 | 식소유현황・재무상황・내부거 래에 따른 수익현황 등----------공정거래위

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제9조의3(순환출자에 대한 의결 권 제한) ①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로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 를 한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 단 내의 계열출자대상회사 주 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 - ②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국내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 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으로

第11條(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 의 議決權 제한)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會社로서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는 취득 또는 所有하고 있는 國內系列會社株式에 대하여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2. (생략)
- 3. 당해 국내 계열회사(상장법 인에 한한다)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.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(「상법」 제344조의

	써	7	기년	들어]	형	성:	된	순	환	출	자	를
	해.	소`	한	경	우	-에	는	제]1ਵੱ	당을	<u></u>	적	용
	<u>하</u>	기	0}	-니	한	다	<u>.</u>						
第	11	條((글	융	회	사	•]	코햩	호	사			밎
	공	익 1	법	인 9	븨	의	결 [·]	권	제	한) (1	_
	1.	• 2	. (현	행	과	같	음)				

<삭 제>

3제1항 및 제369조제2항 • 제3 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 는 제외한다)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.

가.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. 정관 변경

다.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 로의 합병,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 사로의 양도

<신 설>

第16條(시정조치 등) ① 公正去來 | 第16條(시정조치 등) ① ------委員會는 제7조제1항, 제8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8조의

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 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6 조에 따른 공익법인등(이하 "공익법인등"이라 한다)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계 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없다. 다만, 공익 법인등이 해당 국내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3, 제9조, <u>제9조의2</u>, 제10조의2, 제11조, 제11조의2부터 제11조 의4까지 또는 제15조를 위반하 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 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 [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는 기업결합 당사회사(기업결 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 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 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 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 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] 또는 違反行爲者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是正措置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2조제6항 단서에 따른 申告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같 은 조 제7항에 따른 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.

- 1. ~ 8. (생략)
- ②・③ (생략)

第17條(課徴金) ① ~ ③ (생략)

	제9조의2,	제9조의3
	.	
1. ~ 8. (현	행과 같음))
②・③ (현행	함과 같음)	
第17條(課徵金)) \bigcirc \sim \bigcirc) (혀행과

같음)

-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 (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)제 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 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- 1. 제8조의2(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)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차대조표(이하이 항에서 "기준대차대조표"라 한다)상 <u>자본총액의 2배를</u> 초과한 부채액
- 2. (생략)
- 가. 당해 자회사가 상장법인
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
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및
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
 경우에는 100분의 20

나. (생략)

<신 설>

<u>다.</u>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<u>100분의 40</u> 3. (생 략)

4
1
<u>자본총액을</u>
O /키레기 기 ()
2. (현행과 같음) 가
/I.
경우에는
100분의 30
100 (2.1.00)
나. (현행과 같음)
다.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
<u> 경우에는 100분의 20</u>
<u>라.</u>
100분의 <u>50</u>
3. (현행과 같음)

4. 제8조의2(지주회사 등의 행 | <삭 제> 위제한 등)제3항제1호의 규정 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손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 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 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손자 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손자 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 어 산출한 금액

가. 당해 손자회사가 상장법 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 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 는 100분의 20

나.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손자회사의 경우에는 1 00분의 40

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) ① 공 시대상기업집단(동일인이 자연 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) 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 (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 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

제23조의2(특수관계인에 대한 부 제23조의2(특수관계인에 대한 부 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) ① -------국내회사는 특수관계 인(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 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동일 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 관계인과 합하여 주식발행총수 여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 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
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유한 국내계열회사 또는 그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계열회사(국 내계열회사가 「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|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경우에는 발행주 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 는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도 적 용한다)-----

-----정당한 이유

<u>형 및 기준----</u>

1. ~ 4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1. ~ 4. (생 략)

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, 보안 성,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③ • ④ (생 략)

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

第66條(罰則) ① 다음 각 호의 어 第66條(罰則)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億원 이하 의 罰金에 處한다. 1. ~ 5. (생 략) 1. ~ 5. (현행

1. ~ 5. (생 트 <u><신 설></u>

- 6. ~ 11. (생 략)
- ② (생략)

第71條(告發)① 第66條(罰則) 및第第67條(罰則)의罪는 公正去來委員會의告發이있어야公訴를 제기할수 있다.

② ~ ⑥ (생 략)

\$66條(罰則) (<u>1</u>)
<u>_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
5의2. 제9조의3을 위반하여 의
결권을 행사한 자
6. ~ 11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第71條(告發) <u><삭 제></u>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